

『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태 근 의원

2. 제안이유

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. 9. 5.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, 1978. 10. 5.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자연보호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자연보호사업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7조).
-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, 제5조, 제5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. 9. 5.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, 1978. 10. 5.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자연보호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, 안 제7조에서 자연보호사업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구미 금오산에서 전국 최초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자연보호운동 종주도시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육성과 지원, 보조금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조직과 육성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